

경북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 교통 문제

도로 개설(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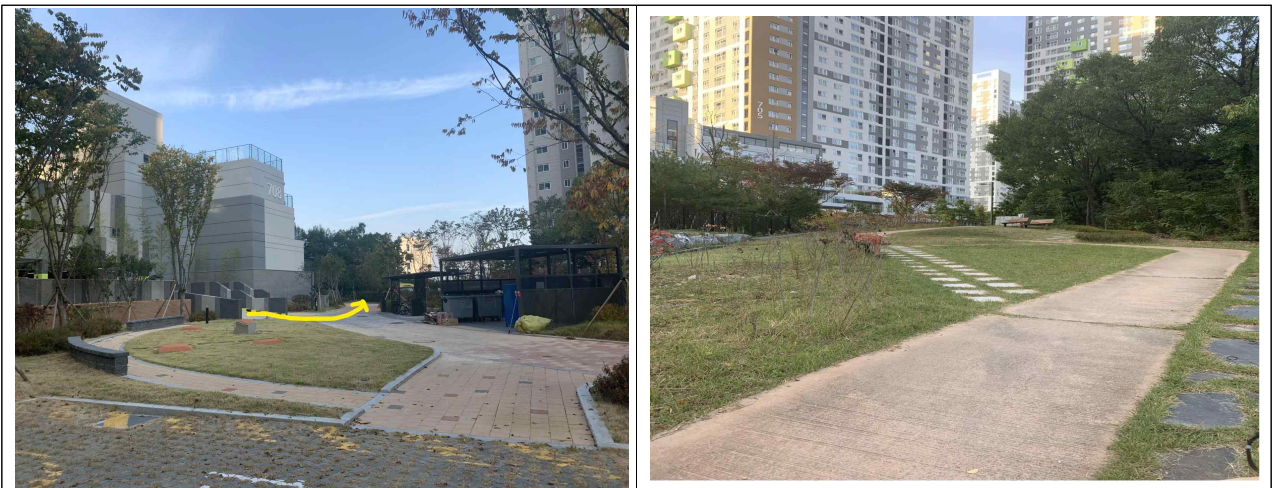
- 노란색 : 현재 주 출입구 쪽을 확장하는 방법. 우방 아이유셀 센터 상가가 불법 점용하여 노점을 운영하는 인도 중 일부를 걷어내 현재 사용하는 출입구를 확장함.
- 파란색 : 기존 농사용 관습로를 포장하여 주 출입구에서 멀어 피해를 보는 703동, 704동 입주민을 위해 길을 틔움.
- 주황색 : 기존 데크 주차장 출입구로 설계된 703동 파노라마 주차장과 등산로로 쓰이는 길을 포장하여 경찰청 뒤편으로 길을 땀. 출퇴근 시간 차량 분산 효과가 제일 높음.

- 분홍색 : 기존 데크 주차장 출입구로 설계된 703동 파노라마 주차장에서 검무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어 길을 낸. 추후 경북도청 신도시 순환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등 활용도가 매우 높음.
- 보라색 :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개설하려 용역을 준 길.

※ 정보공개청구 및 방문 민원 등 개발공사 측과 여러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질의를 넣었으나, 나머지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분홍색 길을 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단 한 번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였음. 그러며 오로지 보라색 길만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 개설 예정 도로(보라색 도로)의 문제점

① 주민들의 도보 등하교 및 출퇴근길 유실



- 현재 도보로 사용 중. 입주민 자녀들의 어린이집, 풍천풍서 초교, 풍천중학교 도보 등·하교 길 및 경북지방경찰청·경북도청 직원들의 도보 출퇴근길로 활용 중.
- 우방 아이유셀 센터 아파트 및 본 단지 입주민 등 1일 도보 이용자 400여 명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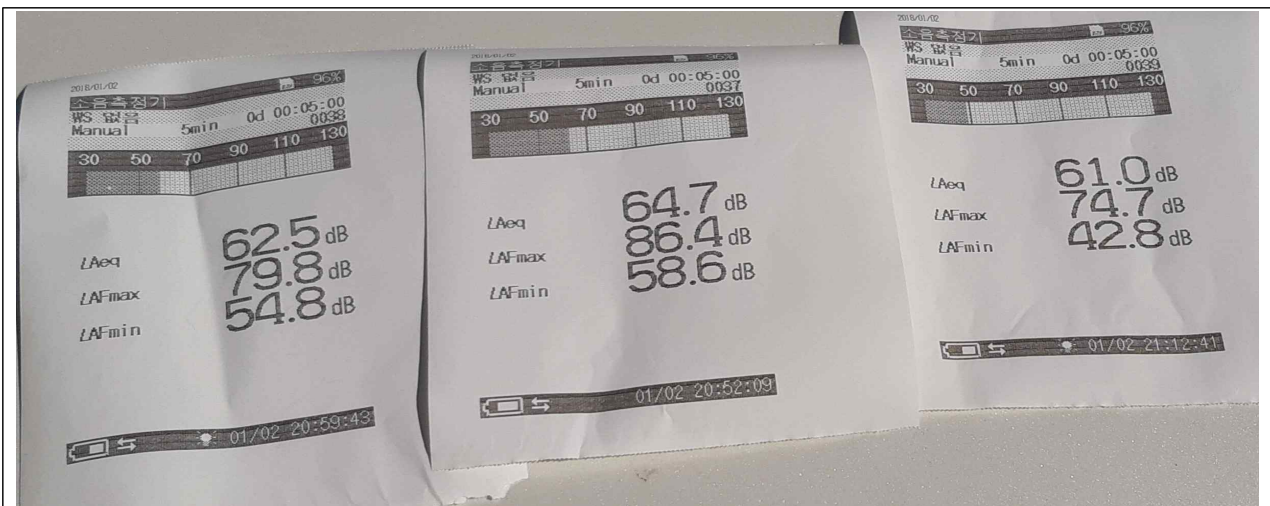
- 도로개설로 인해 입주민들의 도보가 유실되며, 안전성을 잃게 됨.
- 더불어, 도로가 개설될 시 도보로 이용하던 입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게 되어 교통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 그에 따라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추측 가능.

② 테라스동 입주민의 기본 주거권 침해 문제

-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으로 입법된 「헌법」 제3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에 노력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이자 공공기관인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주거공간과 불과 2m 남짓 떨어진 공간에 보행로가 아닌 도로를 개설하고자 계획 중.
-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려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동시에 허가/승인을 받아야 함.
- 더불어, 테라스동 입주민은 입주 당시 도로개설에 관련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하였고, 개발공사 측에서도 이를 인정한 상태임. 1쪽에서 제시한 그림에 표기되어 있는 다른 길을 개설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보라색 길을 개설하게 될 경우 테라스동 입주민들이 받게 될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소통을 거부하고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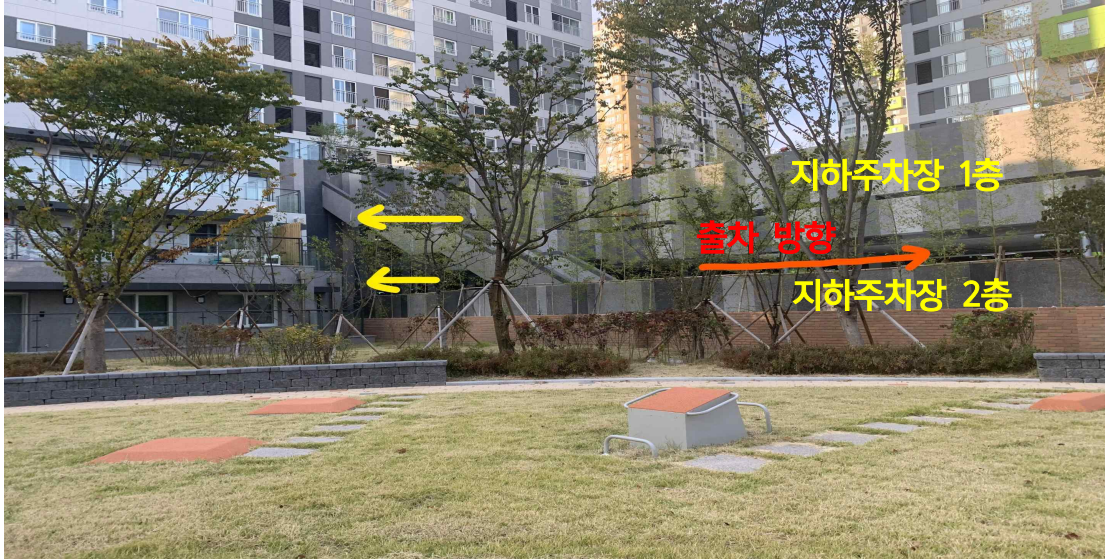


- 2020.10.18.(일) 11:30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세대(708동 104호) 테라스, 안방 발코니 등에서 측정한 결과 생활 소음 기준치인 55dB을 상회하는 수치 측정되었고, 차량이 지나갈 때 순간 소음은 교통소음 기준인 68dB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 86.4dB이 측정됨.
- 상시 도로로 사용될 경우,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매연·악취 등의 문제로부터 인접한 세대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며, 만약 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될 경우 테라스동 입주 세대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1. 708동 104호 안방 발코니에서 측정한 수치
2. 708동 104호 테라스에서 측정한 수치 : 차량 정차 시
3. 708동 104호 테라스에서 측정한 수치 : 차량 주행 시

-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로 옆 707동 입주민들은 주차장 차량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임. 지하 2층 주차장을 통해 차량이 707동 앞으로 출차 할 경우, 소음·진동 증폭은 물론 분진 및 매연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으로 예상



- 707동 앞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어 708동 주민들은 차로를 지나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이용하여야 함



- 경북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는 '지상에 차량 없는 안전한 아파트'로 홍보되었음. 테라스동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조건으로 입주하였으나, 안전한 아파트의 혜택도 누리지 못한 채 피해만 고스란히 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
- 현재 입주민의 자녀 다수가 영유아이므로 단지 내에 도로가 개설될 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입주민들은 자녀 안전 문제로 고통받게 될 것임.
- 개발공사 측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 생기는 소음·진동, 악취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시 도로로 사용될 경우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문제로부터 인접한 세대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

③ 교통체증의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 필요

- 현재 신도청의 인구가 주민등록상 2만을 앞둔 상황에서 아파트 세대수 계획에 따른 도로계획이 미비한 상황.
- 또한 현재 개발공사에서 코오롱하늘채에 제시한 도로의 경우 새로운 좌회전 신호의 개설로 인해 교통체증의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타당성이 의심되는 상황
- 코오롱하늘채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의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 좁은 도로로 인해 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계속해서 교통체증을 호소하는 상황임.
- 이에 대해 순환도로 개설을 경북개발공사 측에 요청하였으나, 예산을 핑계로 순환도로 개설 요청을 무시한 채 2단계 조성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도시 전체의 순환 및 추후 신도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도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함

| | |
|----|-------------|
| 참고 | 헌법, 세계인권선언문 |
|----|-------------|

- 「헌법」 제35조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문」 제25조 제1항 :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그 밖의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의 결핍의 경우에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